

일본의 방송지주회사 현황 및 함의

1. 들어가며

일본에서 주식소유에 의한 회사의 경영 지배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순수지주회사)의 형태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순수지주회사체제는 1997년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의 개정¹⁾에 의해 가능해졌으며, 이 후 주식교환·회사분할제도의 도입이나 조직재편세제(組織再編稅制)¹⁾·연결납세제도의 정비 등 기업관련 법 관계의 제도개편도 함께 이뤄지면서 지주회사 형태는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²⁾

이에 따라 방송분야에 있어서도 순수지주회사의 설립자체는 가능했다. 하지만 일본의 기간방송사업자(基幹放送事業者)³⁾에게는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集中排除原則)⁴⁾이 적용되어 복수의 기간방송사업자를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 형태의 활용이 불가능했다. 또한 방송지주회사에는 외국자본의 주식의결권 제한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도 주요 기간방송사업자들이 지주체제로 전환하지 않았던 이유 중의 하나였다. 외국자본은 기간방송사업자의 주식을 20% 이상 보유하더라도 주식의결권은 20% 미만으로 제한되었으나, 지주회사에는 이와 같은 법적 규제가 직접 적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기존의 기간방송사업자는 외국자본의 경영권 취득이라는 위험성 때문에 선불리 방송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1) 회사법상의 조직재편성에 부과되는 세금제도를 의미함.
2) 총무성(2008). 제도의 사전평가서-인정방송지주회사제도의 도입-,
3) 전파법(電波法) 규정에 의해, 우선적으로 할당된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방송국 사업자를 말함. 지상 기간방송사업자, 위성기간방송사업자, 이동수신용기간방송사업자가 있음.
4) 복수방송사업자의 소유·지배를 금지하는 취지의 원칙(「방송국 개설의 근본적 기준」 총무성령(總務省令)에 의해 규정). 일본의 방송법에서는 방송이 민주주의에 기여해야 함(제1조)에 의거 방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한 한 많은 자가 확보, 방송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가능한 한 많은 자가 향유하도록(제2조) 규정하고 있음. 이를 위해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을 두었으며, 방송의 다원성, 다양성, 지역성 확보를 정책적 목표로 하였음. 현재는 방송법 제93조 제1항 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총무성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간방송 업무에 대한 표현의 자유 향유 기준(基幹放送の業務に係る表現の自由享有基準)」으로 변경됨.

하지만 일본 방송업계는 방송의 디지털화 준비에 따른 자금수요 발생, 방송경영 악화에 따른 효율화, 통신업종과의 연계강화를 위해 방송지주회사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총무성은 2006년 10월, ‘디지털화의 진전과 방송정책에 관한 조사연구회(デジタル化の進展と放送政策に関する調査研究会)’의 최종보고서⁵⁾를 검토, 일본국회는 이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인정방송지주회사(認定放送持株会社)⁶⁾를 설립, 다른 방송사업자를 자회사로 거느리는 것이 2008년 4월 1일부터 가능해졌다.⁷⁾

이제 일본에서 방송지주회사가 도입 된지도 5년차에 접어들었다. 본 글에서는 일본 지상파민간 방송(이하 민방)의 방송지주회사와 관련된 규제와 현황을 살펴보고, 도입과정에서 제시되었던 필요성과 장점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가 무엇인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일본 방송지주회사제도상의 규제사항⁸⁾

방송지주회사제도에서 규제상의 핵심 사항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방송지주회사에 대한 특정주주의 의결권 보유제한이다. 일본의 방송법 제8장에는 특정주주가 방송지주회사에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의결권 비율을 10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제는 기존의 기간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었던 사항이었으나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면서 방송지주회사에 적용시킨 것이다. 특정주주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3분의 1로 제한하는 것은 특정인의 방송지주회사 및 그룹전체 지배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즉, 회사경영과 소유를 분리하여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특정주주가 미디어 그룹 전체를 지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방송의 표현의 자유, 공공성, 다양성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의 완화이다. 앞서도 설명하였듯이 기간방송사업자는 다른 기간방송사업자를 소유⁹⁾하여 자회사로 들 수 없었으나,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면서 방송지주회사는 복수의 기간방송사업자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게 되었다. 방송지주회사는 출자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해야 자회사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100% 보유해도 무방하다. 다만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는 지상기간방송사업자 수는 가중치를 적용한 합계 12개사까지 허용된다.¹⁰⁾ 그리고 같은 방송권역

5) http://warp.ndl.go.jp/info:ndljp/pid/286615/www.soumu.go.jp/menu_news/s-news/2006/pdf/061006_6_bt2.pdf

6) 일본 방송법상의 정식명칭임. 본 글에서는 방송지주회사라는 명칭으로 통합하여 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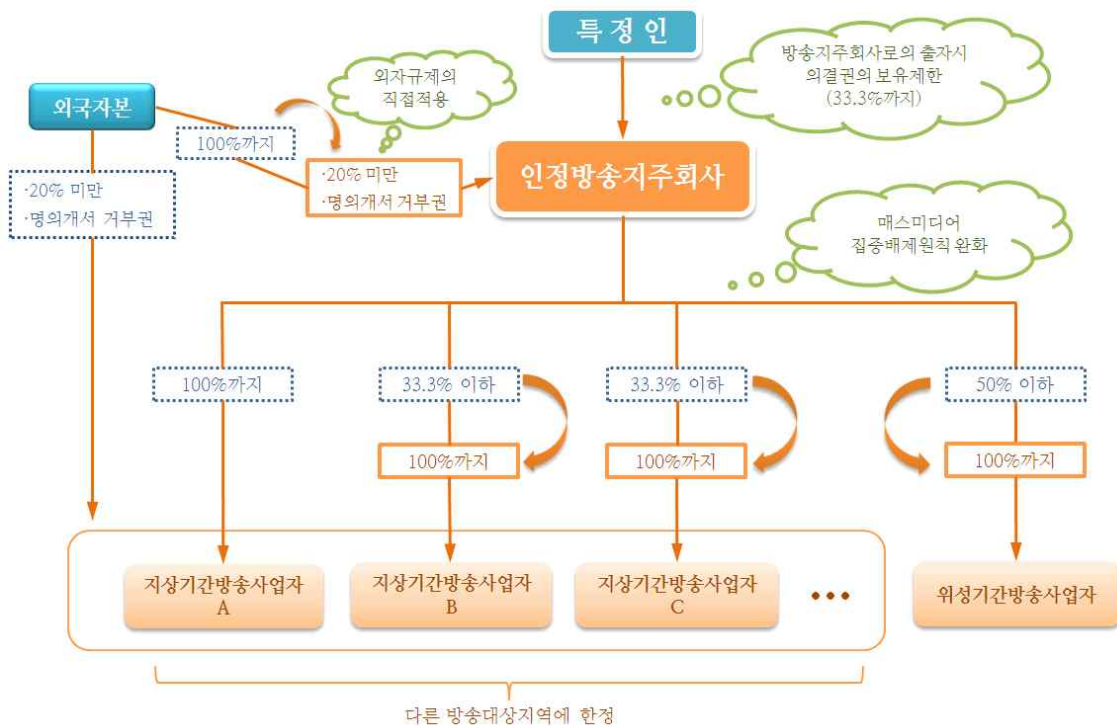
7) 일본 방송법 제8장에는 인정방송지주회사의 정의, 인정, 신고, 외국인 취득 주식의 취급, 기간방송 업무 인정 등의 특례, 자회사의 책무, 의결권의 보유제한, 승계, 인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8) 부록에 일본 방송법상의 ‘방송지주회사’ 관련 사항을 첨부하였음.

9) 여기에서 말하는 소유란 경영적 차원의 지배를 의미함. 주식은 3분의 1까지 보유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일본에서는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여야 소유를 인정.

에서는 복수의 지상기간방송사업자를 소유할 수 없다. 또한 방송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지상기간방송사업자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도 금지된다. 결과적으로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의 완화는 기존에 불가능했던 주요 미디어그룹의 복수 지상기간방송사업자 소유를 허용해주었다는 차원에서 소유규제 완화를 의미하며, 이를 허용한 일본정부는 일본 미디어산업이 방송중심의 거대 그룹체제로 재편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1〉 일본 방송지주회사제도의 개요



출처: 총무성(2012). 「2007년 방송법개정에 관해서」, p.24.

셋째, 방송지주회사에도 외국자본의 주식 의결권 행사 규제가 직접 적용된다. 외국자본의 주식의 결권 제한은 2008년 방송법 개정 전까지 지상기간방송사업자에게만 적용되었다. 하지만 현행 방송법에서는 <그림-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상기간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방송지주회사에도 같은 규제가 적용된다. 방송지주회사는 특정지상기간방송국이 취득해야 하는 무선국면허장(無線局免許狀)¹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송법상 신설한 방송지주회사 법규를 통해 외국자본의 주식 의결권을

10) 지상파사업자는 방송 대상지역에 따라 계산방법이 다른데, 광역면허사업자인 도쿄의 방송사업자는 7로, 오사카의 방송사업자는 6으로, 나고야의 방송사업자는 3으로 계산함. 기타 로컬방송사는 1로 함. 이 수의 범위에 있더라도 방송 대상지역이 중복되는 복수의 방송사를 자회사로 거느리는 것은 불가능함. 또한 라디오와 TV를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라디오와 TV를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합쳐서 1로 함.

11) 2010년 방송법 개정에서 특정기간지상방송국은 무선국면허를 인정받아야 함. 이 개정과 함께 일본에서는 방송국면허라는 말이 법적으로 없어짐.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¹²⁾

마지막으로 지상기상방송을 행하는 자회사의 책무영역이다. 일본의 방송은 전통적으로 공공성, 다양성과 함께 지역성을 강조해왔다. 현행 일본 방송법 163조에 따르면, 자회사인 지상기상방송사업자는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집(編集)¹³⁾에 있어서 지역의 다양한 프로그램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해당 방송지역 대상의 자체제작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는 규정을 둬으로써 자회사의 지역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을 요약해 보면, 일본의 방송지주회사체제 전환은 기존 지상기상방송사업자의 소유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거대 미디어그룹을 탄생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일본의 방송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송지주회사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 하고자한 경제적 차원이 핵심 목적이 라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주의 방송지주회사 소유를 제한하여 방송의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방지하고, 실제 지상기상방송을 행하는 자회사에게는 지역성의 책무를 신설, 방송지주회사체제 전환의 명분을 확립시켰다.

3. 일본의 방송지주회사 현황

일본에는 전국적으로 126개의 지상기상방송국이 존재하지만, 실제 방송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도모할 수 있는 자본력과 다수의 자회사를 거느린 곳은 5대 민방네트워크¹⁴⁾의 정점(頂点)에 있는 동경의 키스태이션 5사¹⁵⁾이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방송지주회사로 전환한 것은 (주)후지TV이다. (주)후지TV는 2008년 10월 1일, 상호를 (주)후지미디어홀딩스(이하 후지미디어HD)로 변경함과 동시에 신설법인 (주)후지TV를 설립, 텔레비전 방송면허¹⁶⁾를 포함하는 현업부분 전체와 ‘후지TV’ 라는 상호를 신설법인에 분할·승계함으로써 100% 자회사화 하였다. 기존 (주)후지TV는 1997년 8월 8일 동경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는데, 방송지주회사인 후지미디어HD가 상장을 유지하는 형태를 취하였으며, 이외 거래소에 상장 중인 자회사는 없다. 후지미디어HD 산하에는 방송그룹, 제작그룹, 영상음악그룹, 생활정보그룹, 광고그룹, 도시개발그룹, 출판 외 기타그룹 등, 7개의 사업영역에 24개의 자회사가 있다.¹⁷⁾ 이

12) 본 규제는 외국자본의 주식보유 제한 규제가 아니라 방송지주회사가 자사주식의 5분의 1 이상 소유한 특정 외국자본에 대해 주식명의개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결권 규제임. 주식명의개서 거부권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회사로부터 주주로 인정받기 위해 주주명부에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는 것을 의미함.

13) 일본의 방송법 내에는 편성(編成)이라는 단어가 없음. 방송법 2장에 ‘방송 프로그램 편집 등에 관한 통칙(放送番組の編集等に関する通則)’을 두고, 편집의 자유, 프로그램 기준, 방송프로그램 심의기관 등을 명시하고 있음.

14) NNS, TV아사히 네트워크, TBS 네트워크, FNN, TXN

15) 전파법상, 특정지상기상방송사업자에 해당함. 니혼TV, 후지TV, TBS, TV아사히, TV도쿄.

16) 2008년 당시에는 방송면허에 해당함, 2010년 법 개정 이후, 현재는 무선국면허장을 취득하고 있음.

17) 후지미디어HD 홈페이지. <http://www.fujimediahd.co.jp/ir/pdf/report/r72m.pdf>

중에서 지상기간방송 및 위성기간방송이 복수소유의 규제를 받게 되며, 다른 사업 분야는 적용되지 않는다.

뒤이어 (주)TBS가 2009년 3월 총무대신의 인정을 거쳐 4월 1일부터 방송사업 부분 및 면허를 연결 자회사였던 (주)TBSTV에 승계하고, (주)TBS는 사명을 (주)TBS홀딩스(이하 TBSHD)로 변경하였다. 기존 (주)TBS는 1960년 10월 10일 동경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는데, 지주회사인 TBSHD가 상장을 유지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TBSHD는 방송관련사업, 영상·문화사업, 부동산사업 포트폴리오 하에 32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으며,¹⁸⁾ 상장사는 없다.

(주)TV도쿄는 당초, 대주주인 니혼케이자이신문사(日本經濟新聞社)의 영향력이 크고, 계열사가 많지 않은데다가 주식을 상호보유하고 있어서 방송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 필요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런데 2010년 3월 6일 (주)TV도쿄, (주)TV도쿄브로드밴드, (주)BS재팬 3사가 지주회사 형식으로 경영을 통합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후 2010년 9월 1일 동경증권거래소로부터 자회사가 되는 (주)TV도쿄를 대신하여 (주)TV도쿄홀딩스(이하 TV도쿄HD)가 설립과 함께 1부 시장에 상장승인을 받았으며,¹⁹⁾ 동월 9일 총무성으로부터 일본에서 세 번째로 방송지주회사로서 인정받아 10월 1일 출범하였다.²⁰⁾

한편,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의 지배력이 강한 (주)니혼TV는 후지TV나 TBS처럼 방송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2008년 3월 쿠보신타로(久保伸太郎) 회장의 정례회견에서도 “(방송지주회사는) 현시점에서는 필요 없다” 라고 할 정도로 소극적인 자세였다.²¹⁾ 하지만 (주)니혼TV는 채널의 다양화, 소셜미디어의 진전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TV광고시장의 침체에 따른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그룹의 핵심회사인 (주)니혼TV방송망, (주)BS니혼, (주)CS니혼을 축으로 하는 방송지주회사체제를 2012년 10월 1일 완료했다. (주)니혼TV는 2012년 4월 26일 (주)니혼TV의 사업부분을 분할승계 할 목적의 회사 니혼TV분할준비(주)를 설립한 후, 총무대신으로부터 방송지주회사설립을 인정받게 된다. 그리고 기존 (주)니혼TV의 상호를 (주)니혼TV홀딩스(이하 니혼TVHD)로 변경, 동시에 무선국면허 및 방송사업 부분을 니혼TV분할준비(주)에 승계·분할하였다. 마지막으로 니혼TVHD의 100% 자회사가 된 니혼TV분할준비(주)는 상호를 (주)니혼TV방송망으로 변경하였다.²²⁾

동경 키스태이션 5사 중에서 유일하게 방송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하지 않은 곳은 (주)TV아사히이다. (주)TV아사히가 지주방송회사로의 전환에 소극적인 것은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의 지배력 때문이다.²³⁾ 아사히신문은 (주)TV아사히 주식의 33.85%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로써, 그룹이 방송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아사히신문과 (주)TV아사히는 사업제휴를

18) TBSHD 홈페이지 http://www.tbsholdings.co.jp/pdf/setsumei/setumei201210_2.pdf

19) TV도쿄는 2004년 8월 5일 동경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20) TV도쿄HD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 <http://www.txhd.co.jp/>

21) <http://www.itmedia.co.jp/news/articles/1003/29/news009.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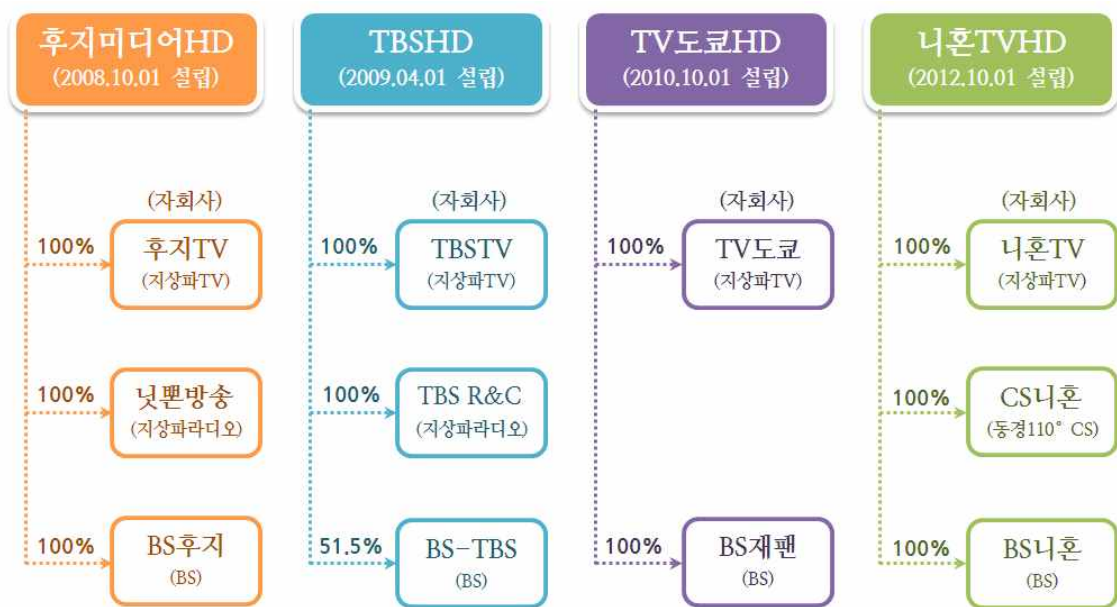
22) 니혼TVHD 홈페이지 내용 참고. <http://www.ntvhd.co.jp/>

23) KBS해외방송정보. 2009년 7·8월호. 日 방송지주제, 방송사 중심의 미디어 재편 예고, p.94.

강화하기 위한 차원의 주식 상호보유를 택하였다. 아사히신문은 (주)아사히TV에 대한 의결권 상쇄를 막기 위해 보유주식을 24.72%로 낮추었으며, 반대로 (주)TV아사히가 아사히신문의 주식 11.85%를 취득하였다. 하지만 (주)아사히TV 또한 방송지주회사체제의 혜택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며, 어느 시점에서 방송사 중심으로 그룹을 재편할 것인가라는 결단만을 남겨둔 상태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2〉 일본의 방송지주회사 현황

(2012년 11월 기준)



출처: 총무성(2012). 「2007년 방송법개정에 관해서」, p.28.

4. 일본 방송지주회사제도의 평가 및 함의

일본의 방송지주회사제도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와 방송경영 악화라는 침체를 탈피하기 위한 방송업계 주도의 제도도입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일본은 장기간의 경제침체 속에서 정부 또한 국가의 핵심 산업분야인 방송·통신 사업자들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경쟁력 강화라는 대의 하에 규제를 완화하여 거대 미디어그룹이 탄생할 경우, 이는 시장의 지배력 확대와 독과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각 방송지주회사들이 밝힌 제도도입의 목적이나 효과 또한 경영적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다. 후

지미디어HD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 자료에서 방송지주회사 전환의 목적을 그룹경영의 강화, 경영자원의 선택과 집중, 사업재편 등을 추진하여 기업 가치를 높이는데 있다고 밝혔다. TV도쿄HD 또한 방송지주회사를 통한 경영통합이 방송콘텐츠의 효과적인 멀티플랫폼 전략을 가능하게 하며, 그룹재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신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²⁴⁾

총무성은 방송지주회사에 의한 그룹경영이 방송사업의 강화 및 경영효율화에 기여하면서도 방송법상에 방송의 다양성, 지역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를 강구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일본의 방송산업에는 이득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본민간방송연맹 또한 디지털 전환비용으로 로컬국당 평균 3억 엔이 필요하지만, 로컬국이 도쿄나 오사카에 두고 있는 지사를 방송지주회사에 통합할 경우, 고정비가 4억 엔 정도 감소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평가하였다.²⁵⁾

하지만 방송지주회사제도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소유규제 완화는 소수 미디어기업의 팽창과 지배력으로 인해 시청자주권의 훼손과 같은 (경제적으로 잡히지 않는)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방송지주회사의 특정주주 주식의결권을 3분의 1로 제한, 특정인의 방송소유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였다는 점과 지역방송의 책무를 방송법상에 명시한 점은 일본 방송지주회사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이다.

국내에서도 (주)SBS가 2008년 3월 4일 (주)SBS홀딩스(現 SBS미디어홀딩스) 설립을 통해 방송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였다. (주)SBS미디어홀딩스는 국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내의 지주회사 관련 법규를 적용받아 설립되었다. 즉, (주)SBS미디어홀딩스는 방송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주)SBS미디어홀딩스의 자회사이자 지상파방송사업자인 (주)SBS가 국내 방송법상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셈이다. 방송법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일본의 방송지주회사제도와는 상당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방송지주회사체계는 특정주주가 지주회사를 소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그룹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현행 국내의 방송지주회사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 방송지주회사만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음에 비해 국내에서는 방송지주회사인 (주)SBS미디어홀딩스 뿐만 아니라 자회사인 (주)SBS와 (주)SBS미디어콘텐츠허브까지 상장되어 있다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일본의 방송지주회사제도는 준비과정에서부터 법적인 테두리를 공고히 하여 만들어졌으며, 그룹전체의 경영효율화는 보장해주되, 특정주주의 그룹지배는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는 점에서 국내 방송지주회사체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법적인 규제체계와 시스템이 훌륭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안에 존재하는 플레이어(경영진과 구성원)이다. 플레이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과 실행능력을 갖지 못하면 시스템은 언제나 왜곡되거나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테두리는 언제나 공고해질 필요가 있다.

24) <http://blog.naver.com/changhyunahn?Redirect=Log&logNo=50161877286>

25) 일본민간방송연맹연구소(2007). 「방송지주회사제도 도입에 따른 민방 소유규제 완화의 효과」.

부록1

일본 방송법 내 인정방송지주회사 내용 발췌

제8장 인정방송지주회사

(정의 등)

제158조 이 장에 있어서 「자회사」란 회사가 그 총주주 등의 의결권(총주주 또는 총출자자의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이 건과 동일.)의 100분의 50을 넘는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하나 혹은 둘 이상의 자회사 또는 해당회사의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자회사가 그 총주주 의결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보유한 다른 회사는 해당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2 전항의 경우에 회사가 보유한 의결권은 사채 등 대체법 제147조 제1항 또는 제1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포함한다.

(인정)

제159조 둘 이상의 기간방송사업자(그 둘 이상의 기간방송사업자가 하나 이상의 지상기간방송업무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건, 다음 조 제1항 및 제166조 제2항 1호, 2호도 동일.)를 자회사로 두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그 이상의 기간방송사업자를 자회사로 두려고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총무대신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2 총무대신은 전항의 인정 신청이 다음 각항에 모두 적합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동항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1. 해당 인정 신청을 한 회사 또는 해당 인정을 받고 설립된 회사(이하 이 건에 있어서 「신청대상회사」라고 한다.)가 주식회사 일 것.
2. 신청대상회사가 기간방송사업자가 아닐 것.
3. 신청대상회사의 자회사(자회사가 될 회사를 포함. 이하 이 건에 있어 동일.)인 기간방송사업자(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총무성령이 규정한 것을 포함한다.)의 주식취득가액(최종 대차대조표에 별도로 붙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이 해당신청회사 총자산 금액(총무성령이 규정하는 방법의 자산총액을 말한다.)비율의 100분의 50을 항상 초과하도록 할 것.
4. 신청대상회사 및 그 자회사의 수지 전망이 양호할 것.
5. 신청대상회사가 다음의 가에서 차까지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1) 혹은 (2)에 해당하는 자가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인 주식회사 또는 (1)에서 (3)까지 해당하는 자가 그 의결권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식회사

- (1)일본국적이 아닌 자
- (2)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 (3)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나 (1)에 해당하는 자에 의해 직접 차지하는 의결권의 비율과 이들이 지배하는 (2)에 해당하는 자를 통해 간접 보유하는 비율의 합이 의결권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주식회사
 다 이 법률 또는 전파법에서 규정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집행이 끝나고 또는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식회사

라 제103조 제1항 또는 제104조(제5항을 제외)의 규정에 의해 인정 취소를 받아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마 제131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 취소를 받아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바 제166조 제1항(제2호를 제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인정 취소를 받아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사 전파법 제75조 제1항 또는 제76조 제4항(제4호를 제외.) 혹은 제5항(제5호를 제외.)의 규정에 의해 면허 취소를 받아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아 전파법 제27조의 15, 제1항 또는 제2항(제3호를 제외.)의 규정에 의해 인정의 취소를 받아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자 전파법 제76조 제8항(제3호를 제외.)의 규정에 의해 등록 취소를 받아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차 임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지주회사

(1) 다음에 해당하는 법률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나에서 자까지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3 제1항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총무성령에서 규정하는 것으로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총무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인정을 신청하는 자(인정을 신청하는 자가 신청대상회사인 경우를 제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 2 신청대상회사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3 신청대상회사의 자회사인 기간방송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4 그 외 총무성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4 전항의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 이외 총무성령이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출)

제160조 159조 제1항의 인정을 받은 회사 또는 인정을 받아 설립된 회사(이하 「인정방송지주회사」 하고 한다.)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 될 경우에는 총무성령의 규정에 의해 즉시 그 사유를 총무대신에게 신고해야 한다.

- 1 둘 이상의 기간방송사업자를 자회사로 보유하게 되었을 때(해당 인정을 받았을 시점에서 둘

이상의 기간방송사업자를 자회사로 보유한 경우 제외).

2 159조 제3항 제2호에서 4호까지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외국인 등이 취득한 주식의 취급)

제161조 금융상품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또는 이에 준하여 총무성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인정방송주식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외국인 등의 성명 및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고, 또는 기록할 것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 그 요청에 응하여 동항에서 규정하는 주식회사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고, 또는 기재를 거부할 수 있다.

2 제116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인정방송지주회사에 한하여 준용한다.

(자회사의 책무)

제163조 자회사인 지상기간방송사업자는 국내기간방송의 방송프로그램 편집에 있어서 그 방송대상 지역의 다양한 프로그램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해당 방송지역 대상의 자체제작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의결권의 보유제한)

제164조 인정방송지주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거나 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특정주식이라 한다.)이 보유기준비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없다.

2 전항의 보유기준비율은 제91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감안하여 10분의 1 이상 3분의 1 미만의 범위 내를 총무성령이 규정하는 비율로 한다.

부록2

일본의 방송지주회사 현황





